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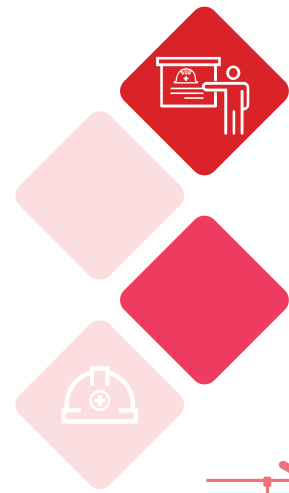
재해를 Zero

위험요소의 지속적 개선



목차 Contents

I 현황	
2023 GKLWITH 재해예방 활동 현황	3p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주요사항	7p
II 2024 중대재해 종합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10p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11p
안전보건 중/장기 목표 수립	12p
III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세부계획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12p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3p
법정 선임관리	13p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14p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이행	14p
IV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계획	
2023년 비상사태 대응훈련	15p
조직 및 대응체계	16p
재해유형별 대응	19p
산업재해조사표	24p
작성방법	25p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예시)	26p
V 사업장 개요	27p
VI 사업장 비상사태 대비 계획	28p



2023 GKLWITH 재해예방 활동 현황

■ 차년도 안전보건경영 목표 재 수립

2024년 안전보건경영목표

비전	안전하고 품격있는, 근로자 친환경 기업 'GKLWITH'
목표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확대를 통한 중대재해 ZERO

2024년 안전 슬로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안전사고 ZERO에서 시작됩니다.

중장기 추진방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체계 확립

안전은 더하고
리스크는 제거하고
함께 웃는

Step 01

2022~2023

·안전경영 시작

Step 02

2024~2025

·안전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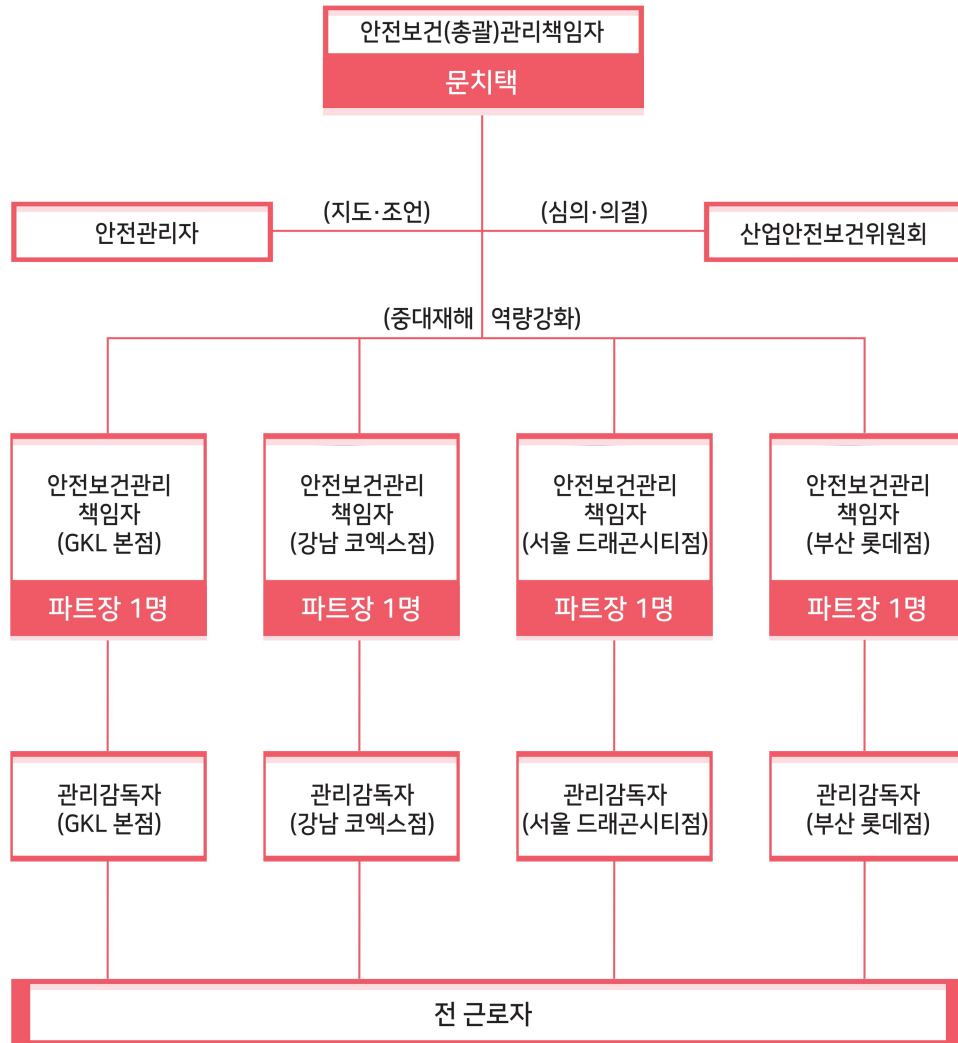
Step 03

2026~

·안전경영체계 확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재구성



■ 안전보건예산 증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확보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산업안전일반	중대재해예방
	집행	예산	예산	예산
2023년	50,600	76,000	64,000	12,000
2024년	-	89,400	71,400	18,000
2025년	-	102,800	80,800	22,000

■ 안전보건교육 시행

- ◎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교육

구 분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연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직	투입 전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투입 전 8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특별교육		해당 작업 종사자의 경우 16시간 이상

- 주요 교육 내용

- 관리감독자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등
-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시행

- ◎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학습하고, 현장 근로자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안전보건관계자 직무 교육사항

구 분	교육시간		교육 시기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신규 선임일 기준 3개월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 전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신규 선임일 기준 3개월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 전후 3개월 이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 ◎ 안전보건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건을 수렴한 체계적인 절차 수립 가능
- ◎ 1년 주기로 사후심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가능



■ 사업장 내 안전사고 사례 발굴

- ◎ 아차사고 공모전 결과

(단위 : 건)

구 분	전체 응모 건수	직접조치 건수(현장 개선)	간접조치 건수(교육 실시)
2022	30	13	17
2023	34	13	2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주체	사업주 (법인 혹은 개인 사업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자)
적용 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단, 5인 미만 제외)	전 사업장 적용
재해 정의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 부상자 혹은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 발생 3명 이상 발생 (1년 이내)
부과 의무 (요약)	- 사업주 안전조치(주요내용)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종사자에 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확보 의무 주요사항(중대산업재해)

	핵심요소	주요내용
중 대 산 업 재 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목표 설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위험성 평가절차 마련 및 실시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등 예산 ■ 유해·위험요인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예산 집행 ■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필요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수행 지원 - 권한·예산 부여 +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운영시 같음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유해·위험 작업자 안전교육	■ 유해·위험한 작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주요사항(중대시민재해)

핵심요소	주요내용
중 대 시 민 재 해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안전관리 인력 확보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 법정 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수교육 실시 포함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행 소요 예산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추가 편성·집행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업무처리절차 마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용시설의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의 개선사항 - 사상자 긴급 구호 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안전 확보 기준·절차 마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절차마련 -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절차 및 필요한 비용 기준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의무 이행사항 점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 분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기관 (양벌 규정)
사 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 상	중대산업재해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 병	중대산업재해	연간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에 한하여)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연간 3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중대산업재해 중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회사 연관성 검토)

구 분	직업성 질병 범위(주요 연관)	연관 영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혈액 전파성 질병	강남 코엑스점 서울 드래곤시티점 부산 롯데점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GKL 본점

◎ 중대재해대응현황

구 분	시행령 조사항	이행내용
중대 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업무 처리절차 마련과 이행상황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대응 중

II 2024 중대재해 종합관리 기본계획

II 2024 중대재해 종합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 추진목적

- ◎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기계·기구 개선
- ◎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선제적 요구사항의 충실한 이행
- ◎ 원청이 공기업인 만큼 정부 정책의 주요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 안전정책 준수
- ◎ 재해사례의 종합적 분석과 개선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기본방향

- ◎ 안전경영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법령에 명시된 안전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안전경영체계 구축
- ◎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장 단위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 시도

◎ 안전보건관리 이행조치 실효성 확보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규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쟁점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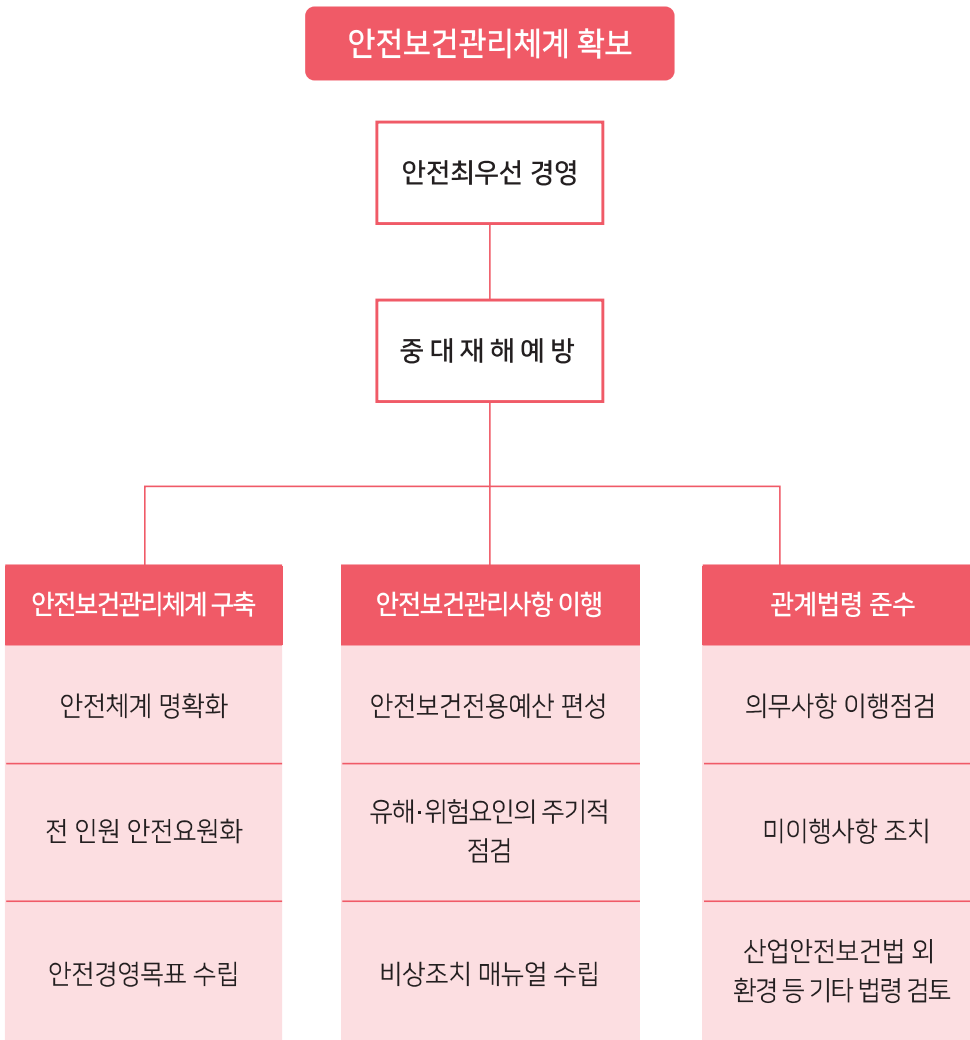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계자 업무평가',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시행



II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



안전보건 중/장기 목표 수립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목표 수립·시행



III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세부계획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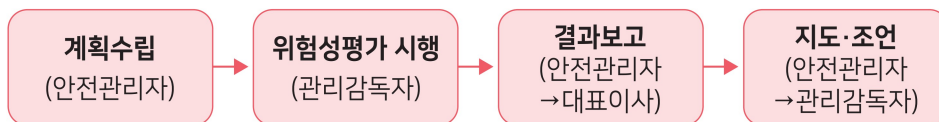
- ◎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점검
 -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 방법 검토 후 위험성 재평가

■ 관련법령 검토

구 분	중처법 시행령	산안법
위험성 평가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항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 현황 및 이행계획

- ◎ 위험성평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요인 점검
- 위험성 평가 후, 위험 요인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개선 완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과 장비의 구비
 - 시행령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 현황 및 이행계획

- ◎ 예산 편성의 체계화
 - 각 영업장 단위에서 안전 예산 편성 요청
- ◎ 예산 집행체계 확립
 -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사용내역, 집행 실적 등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체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회사에 적합한 집행 기준 확립

안전보건관계자의 권한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여 시행령 및 조문 등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
 -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현황 및 이행계획

- ◎ 영업장별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필요한 적정인원 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 평가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평가절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자체평가(안전관리자) → 평가확인(대표이사)
 - 관리감독자 : 자체평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자체평가(안전관리자) → 평가확인(대표이사)
 - 평가활용 : 미흡 때 개선사항 부여 등
 - 평가시기 : 매 반기 1회 시행

법정 선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선임인력 배치

-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토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현황 및 이행계획

- ◎ 안전관리자의 경우 본사 재직 1명 선임신고 완료
- ◎ 영업점의 경우 보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의무사항 이행
- ◎ 보건관리자 선임자격은 아래와 같음(일부발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1항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재해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단,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같음함)

■ 이행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 근로자 의견 청취 체계 마련

구 분	정 기	수 시	비 고
의견청취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험성평가 절차 활용	- 현장 순회 점검을 통한 근로자 의견 청취 -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안전관리자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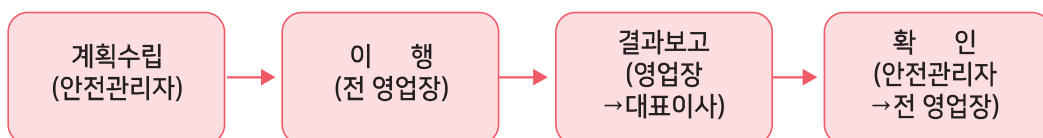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현황 및 이행계획

- ◎ 비상상황대비 매뉴얼 전파
 -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상황별 매뉴얼 전 영업점 전파
 - 최초 피해 발생 → 중간관리자보고(GKL 포함) → 대표이사 보고
- ◎ 비상상황 발생대비 비상대피훈련 시행 결과 기록 및 보존



IV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계획

2023년 비상사태 대응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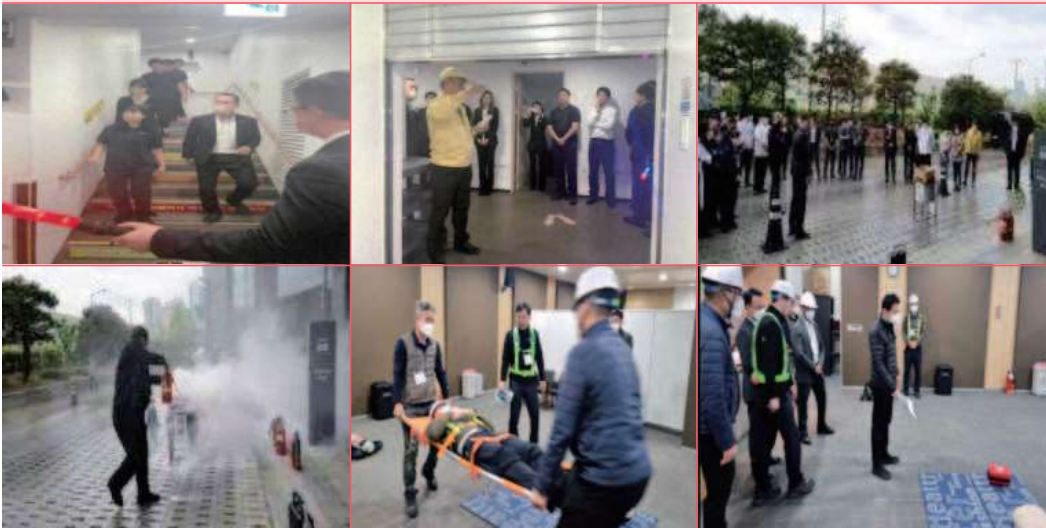
■ 훈련 결과

-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GKLWITH 각 영업점 작업환경에 적합한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개정.
- ◎ 관할 소방서 및 GKL과 협조하여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훈련 실시.

구 분	상황유형	횟수	비고
GKL 본점	화재	2회	
	밀폐공간	2회	
강남 코엑스점	정전	1회	
용산 드래곤시티점	화재	1회	
	테러	1회	
부산 롯데점	화재	1회	

- ◎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초발견자 및 주변근로자 초기대응 능력 향상

훈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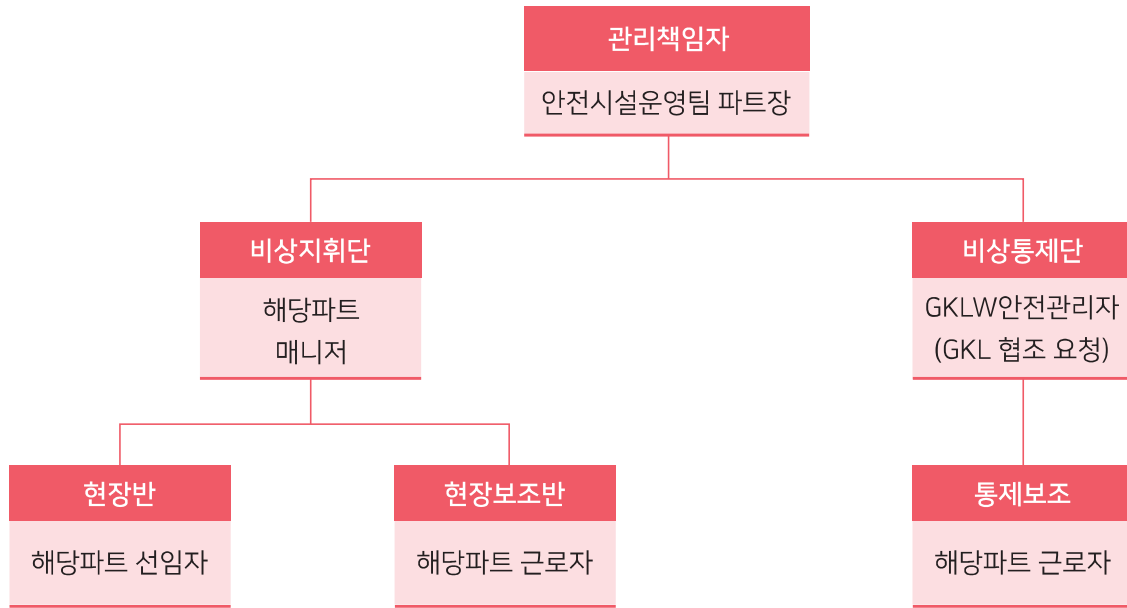


■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점검 결과(반기 1회 점검)

- ◎ 본사 포함 5개 영업점 정상 이행 중.

조직 및 대응체계

■ 비상조직도 및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비상체제로의 전환 및 비상 조직 가동 ■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결정 및 종결 시 종사자 복귀 지시
비상지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지시 실행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 사고원인 조사
현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필요 시) 초동 조치 ■ 비상상황 파악 및 비상통제단에 관련 내용 신속 전달
현장보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지휘단 지시 실행 ■ 현장 대응 지원
비상통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지시 실행 ■ 외부기관과의 연락망 확보 및 필요시 대외 지원 요청
통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 가동 ■ 비상통제단 지시에 따른 대피 및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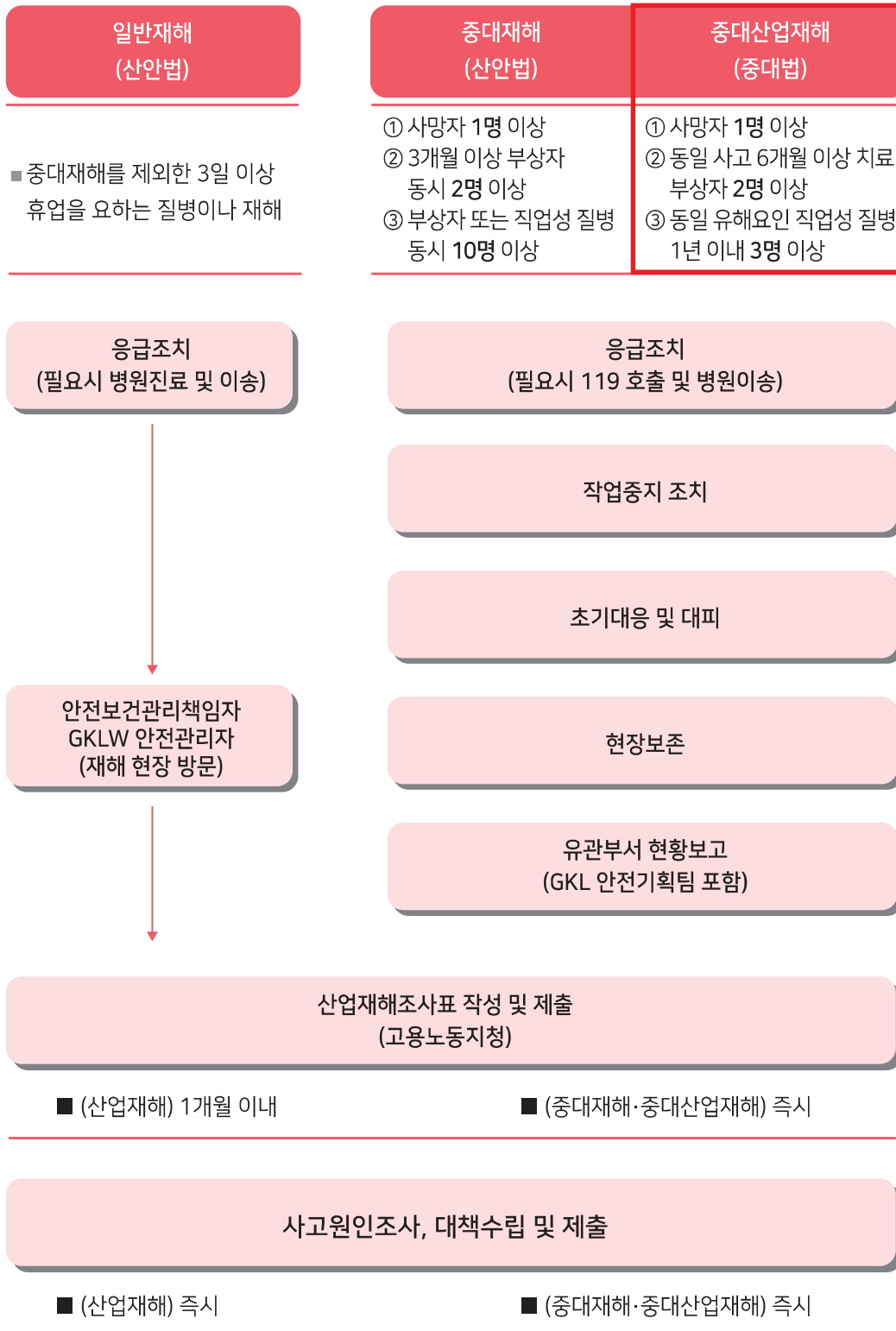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단 계	활 동	내 용
대응조치	상황 전파 및 작업중지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중지
	초기대응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긴급대피	비상 대피장소 긴급대피
	신고 및 보고	상황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및 관할 고용노동부 신고
현장보존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전 지휘 협조	
구호조치	신속한 연락과 처치	최초발견자가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시행(기계정지 등)
	현장 응급처치 시행	119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시행
추가피해 방지조치 (관련자료 5년 보관)	재해 원인 조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유	재발방지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전 근로자)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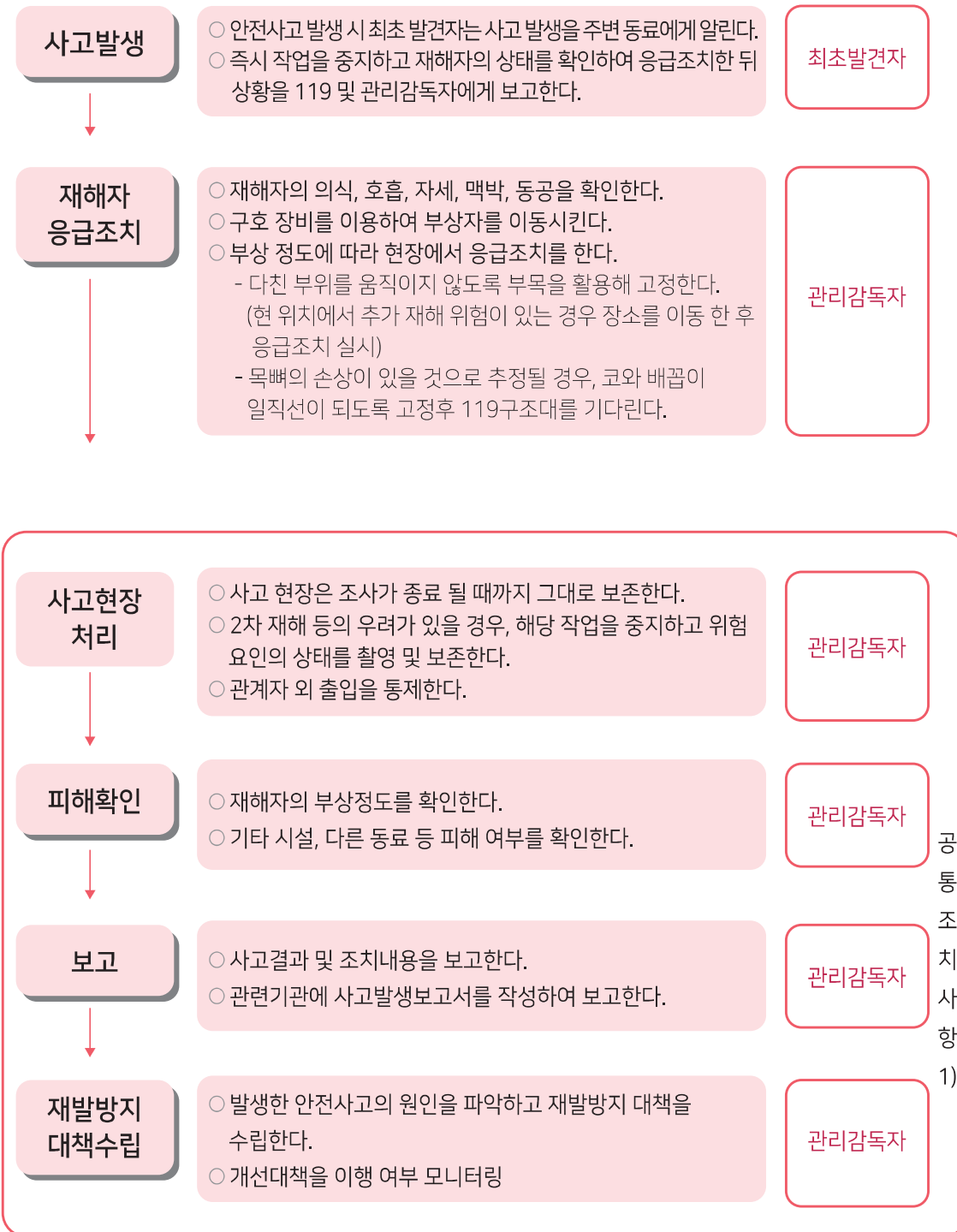
사 항	조치사항
감 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실시, 신속히 대피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방지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 산화성 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산업재해(일반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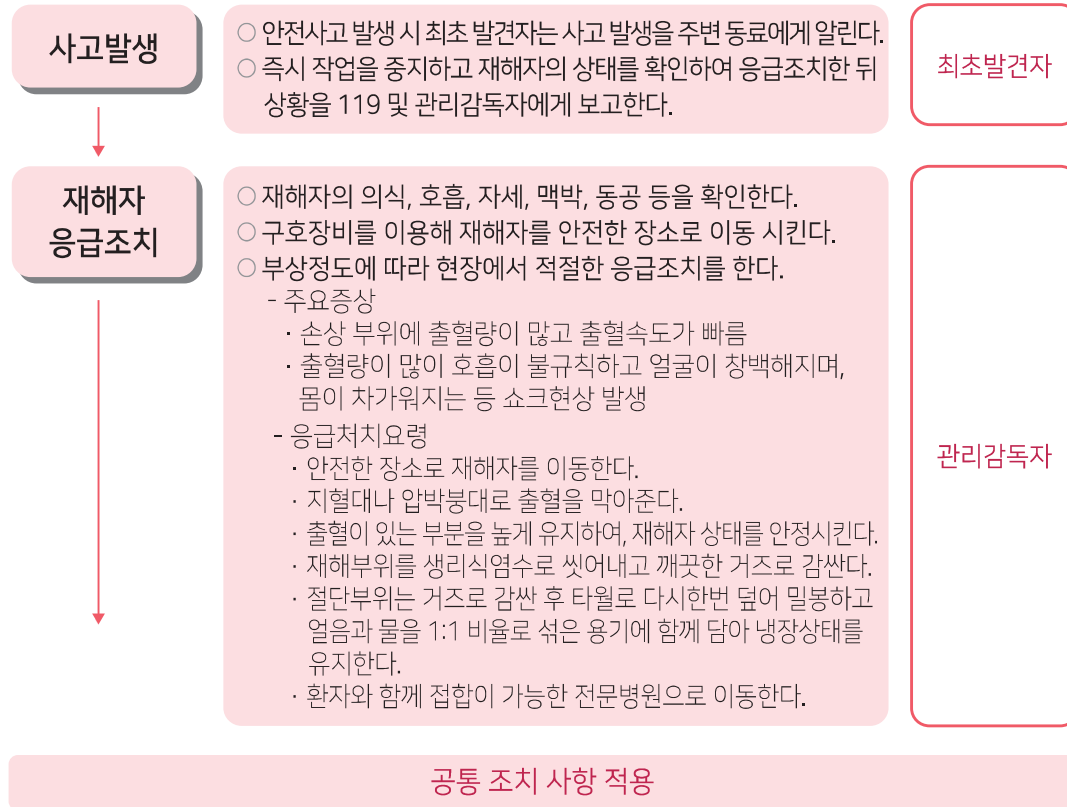
재해유형별 대응

■ 떨어짐,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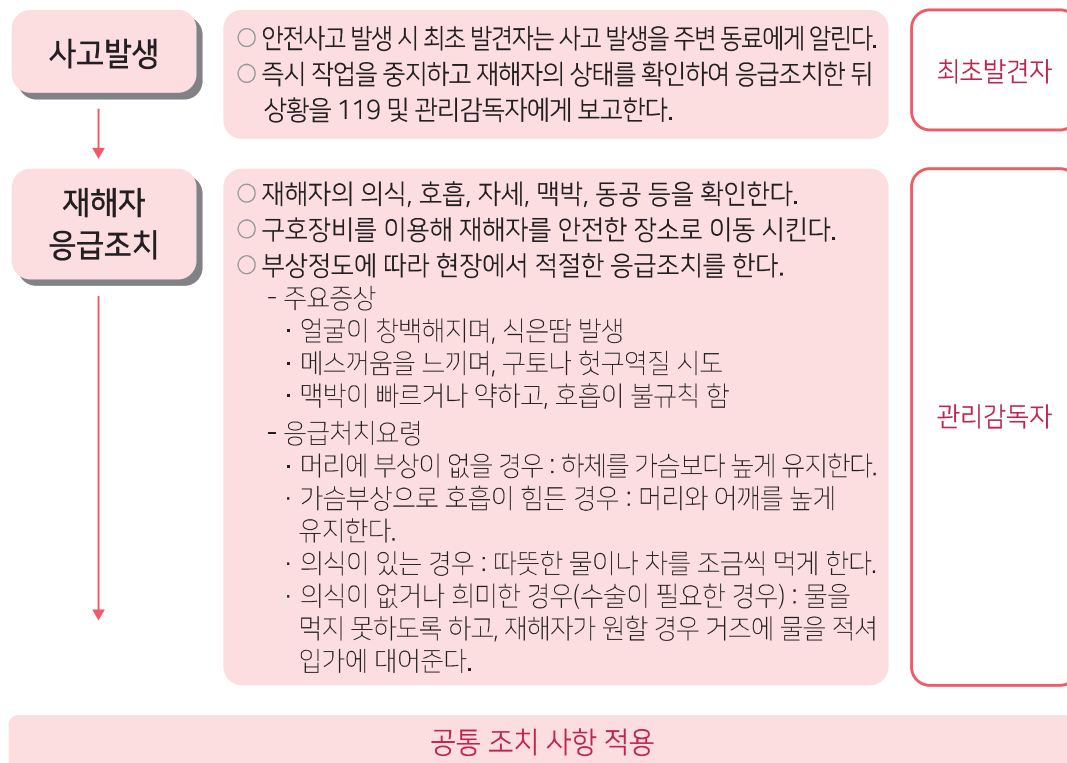


1) 상황별 비상사태 대응조치 시 공통 조치사항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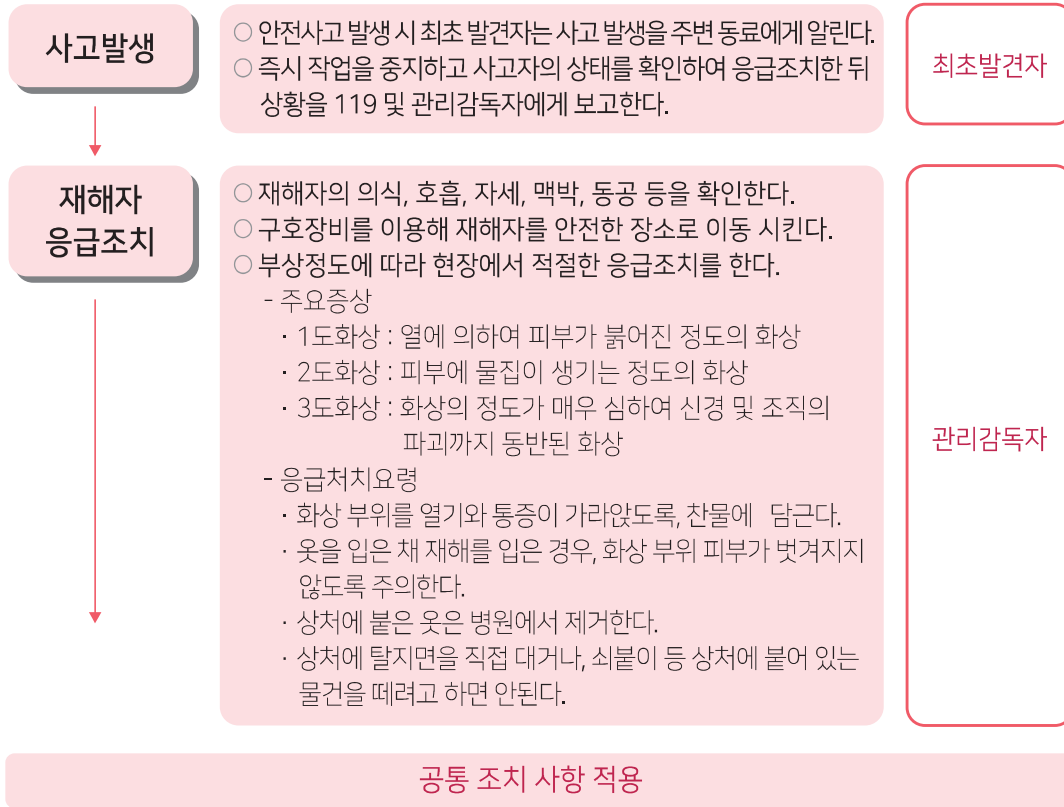
■ 끼임, 베임, 절단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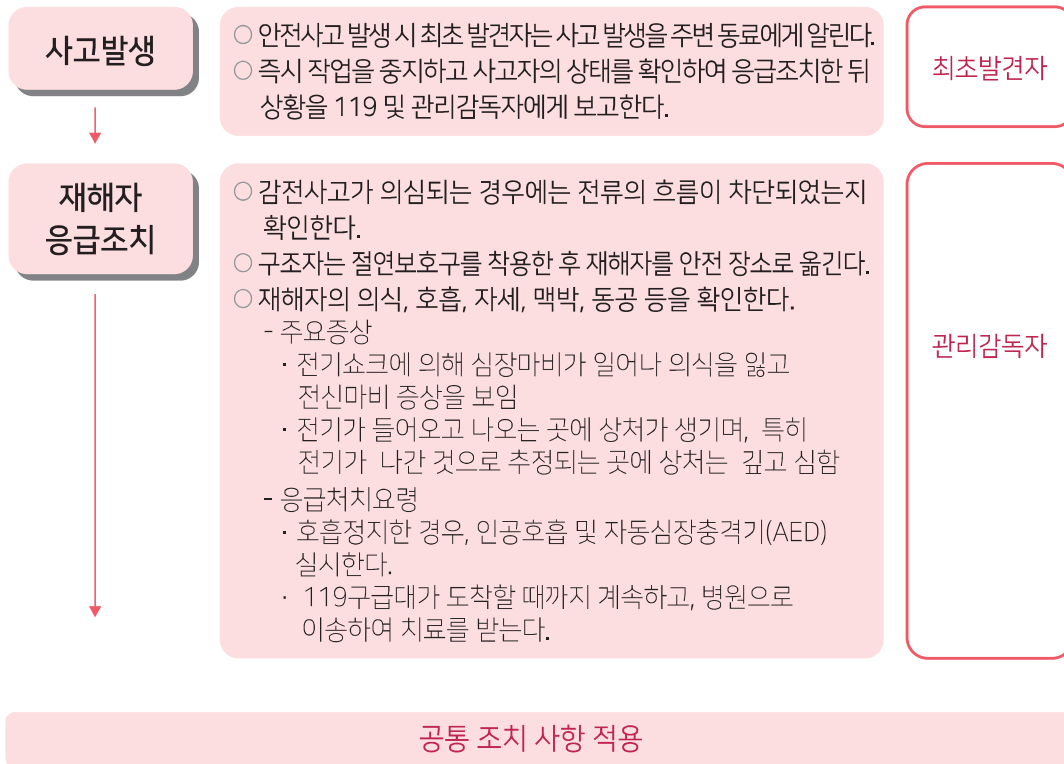
■ 열관련 사고(일사병, 열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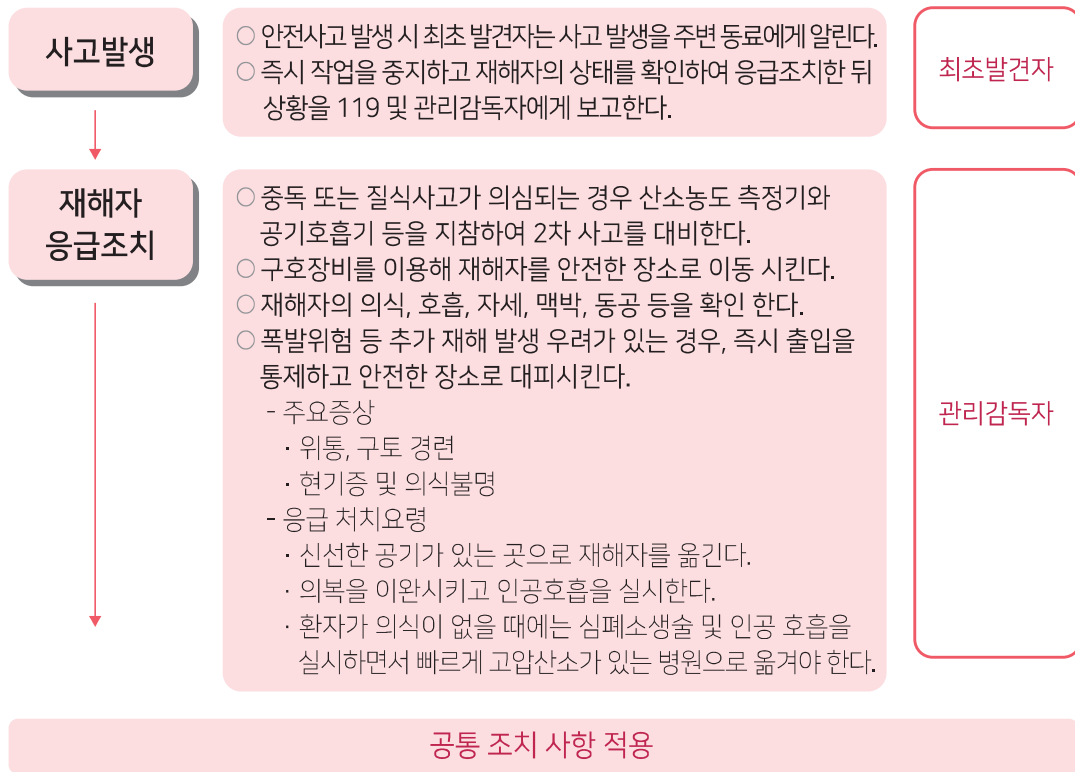
■ 화상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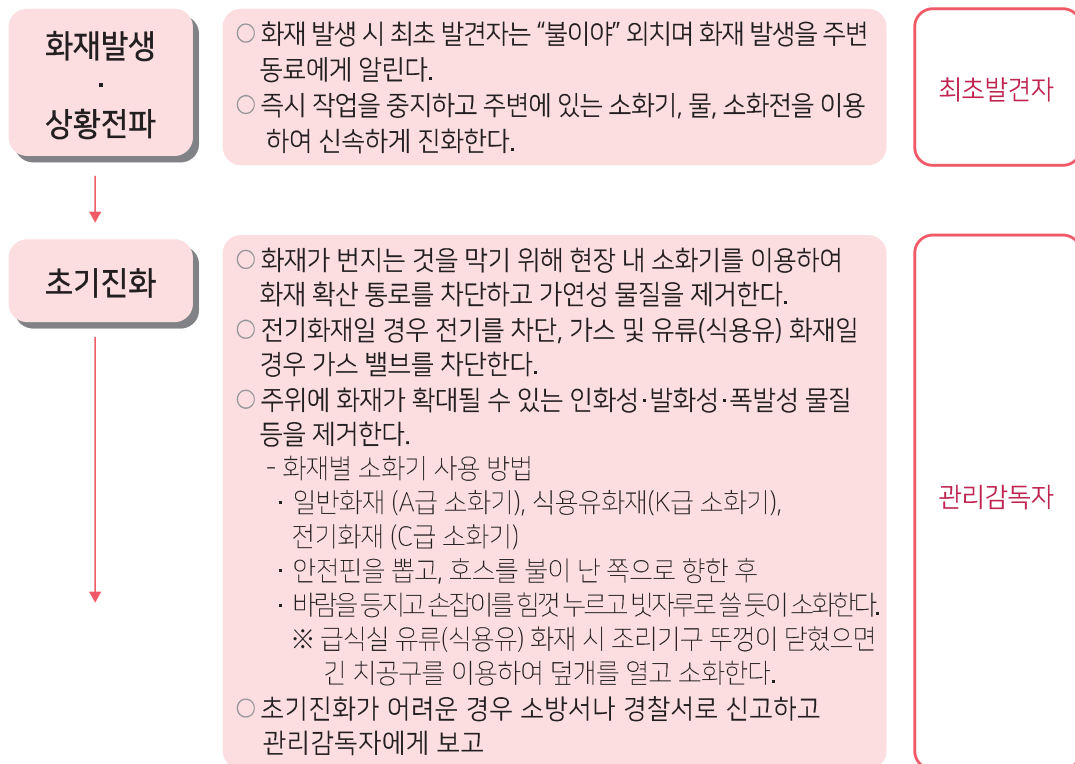
■ 감전사고



■ 가스 누출, 중독 사고



■ 화재사고



구조활동

- 종사자 대피 : 건물 내부 화재 시 나가려는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때 문을 열면 안 된다.
- 실내에 연기가 찼을 때에는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두꺼운 담요나 이불, 옷 등을 물에 적셔 피부를 감싼다.
- 불길의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 때 급하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안전한 장소에서의 응급조치 시행
 - 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심하게 오염되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화상 사고 시 응급조치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근다.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데려간다.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떼도록 한다.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면 안 되고, 물집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

관리감독자

복구활동

- 인화물, 비품, 장비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관리감독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 대책반 해체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 기타사항

구 분	연락처
경찰서	112
소방서	119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02) 584-0009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02) 6711-2800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1588-0075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 재해발생원인			

IV. ⑳ 재발 방지 계획	
-------------------------	--

※ ㉑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 · 공정	□□□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을,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가. 공사 종류 :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나. 공정률 :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 [예: E-1, E-7, E-9 등]
- ⑪ 직업 :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예: 도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직원, 선반기조직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열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 개요 :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여 사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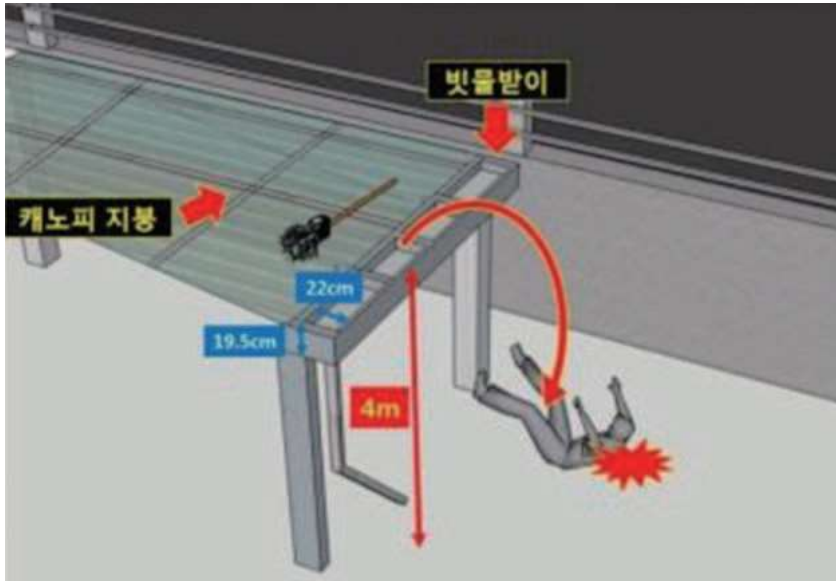
- ⑲ 재해발생 원인 :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를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예시)

재해개요			
소속	예시)교직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성명	○○○
근로형태	예시)교직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00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뎠다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과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에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유사)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4. 종사자 교육 실시
 - 1) 사례 분석 및 결과, 원인 파악, 방지대책 등

V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GKLWITH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03(선산빌딩 4~6F)
다. 대표자 : 문치택
라. 연락처 : 02-3442-7628
마. 업종 : 사업지원 서비스업
바. 근로자수 : 403명
사. 설립연도 : 2018. 10. 3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가.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나. 보고 내용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대비 준비 사항

가. 필요 서류

- 1) 안전보건점검일지
- 2) 안전보건교육일지
- 3) 보호구 지급대장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5) 건강진단 기록서
- 6)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임금대장
- 7)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서류
- 8)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서류
- 9) 작업계획서·허가서
- 10) 기타 안전보건 관계 서류

나.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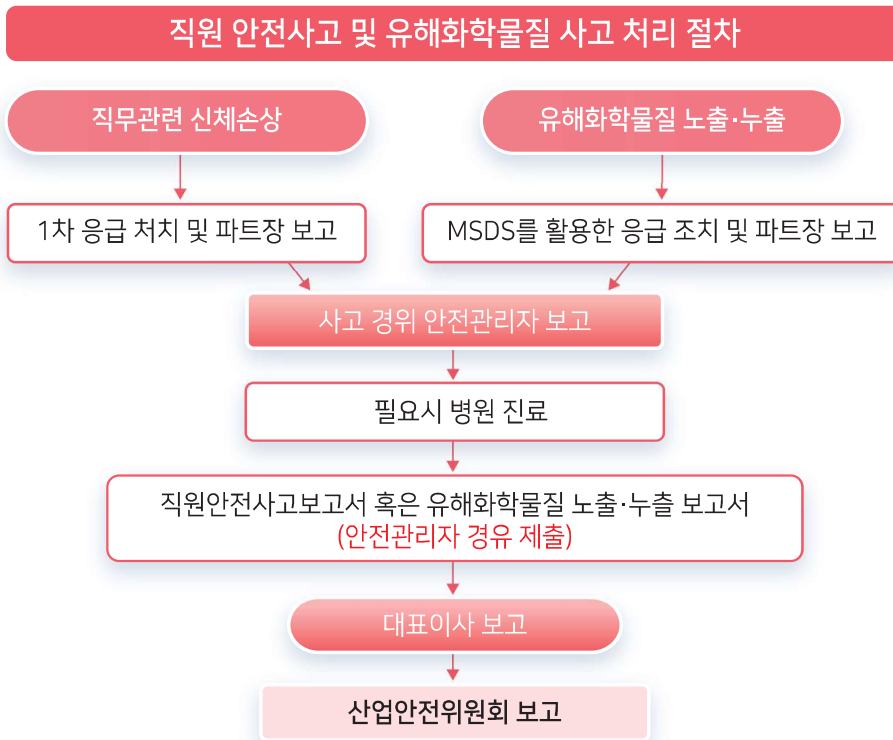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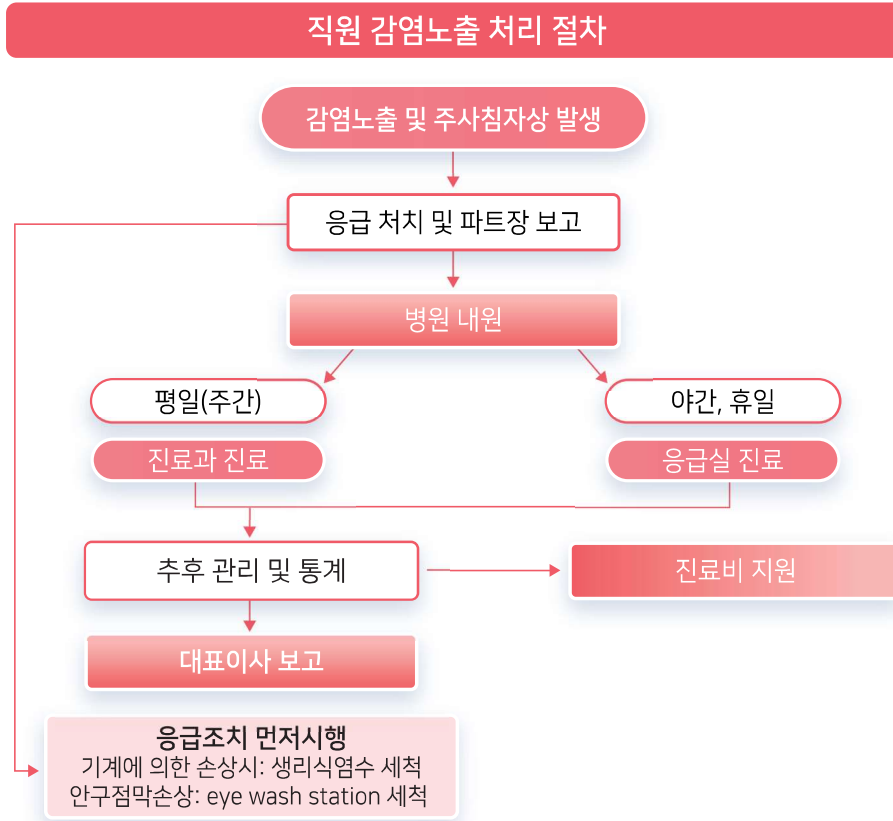
- 1) 정리정돈 및 기타 재해와 관련된 안전시설 여부
- 2) 안전보건표지 및 난간 설치 여부
- 3) 기타 안전보건관련 점검 사항

유관기관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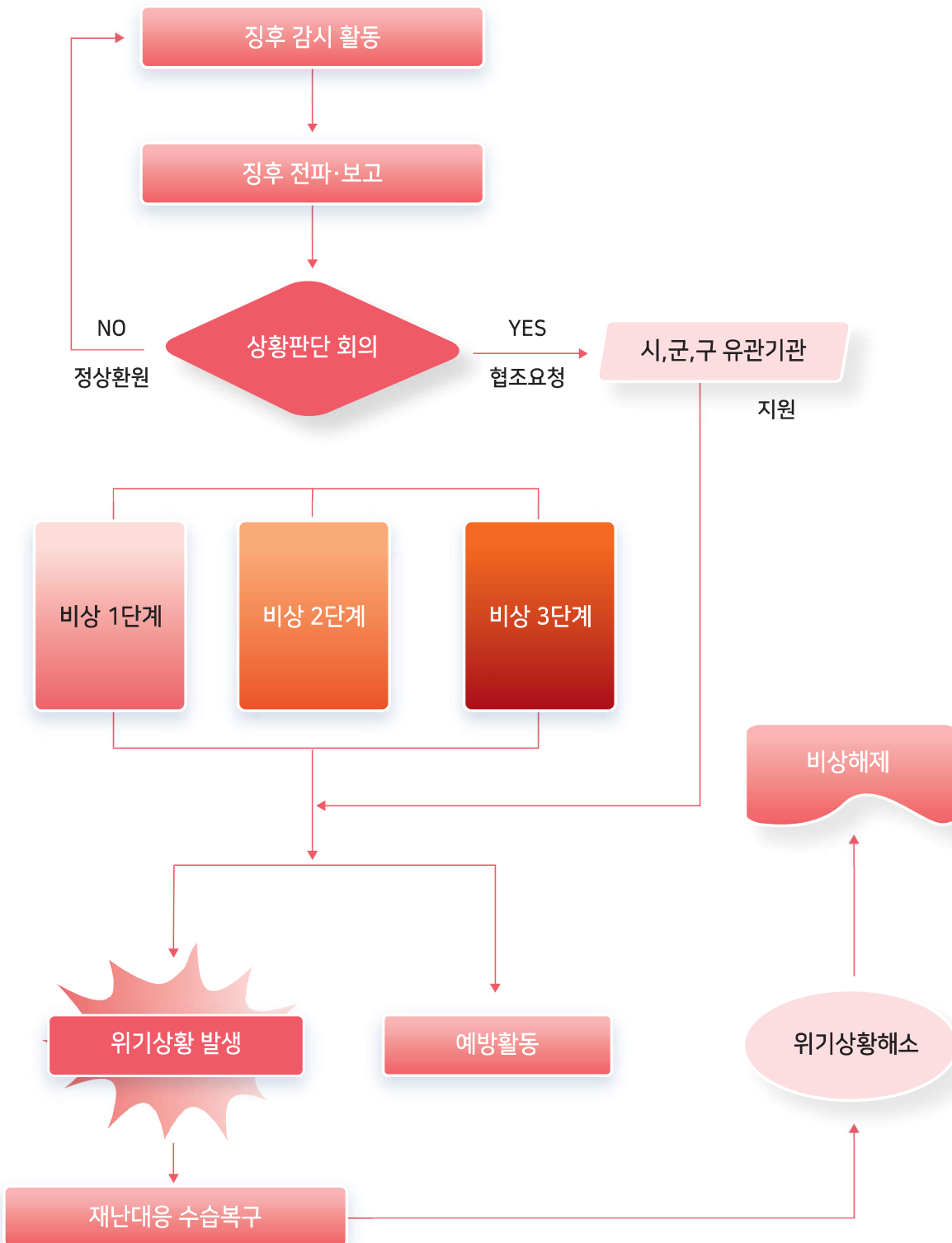
담당기관	연락처
소방본부	02-3706-1319
강남소방서	02-6981-7475
강남경찰서	02-112
도시가스(코원에너지)	1599-3366
가스안전공사(서울광역본부)	02-3411-2081
한국전력	123
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02-6488-6600
서울고용노동청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02-2250-5838
서울고용노동청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2-584-0009

VI 사업장 비상사태 대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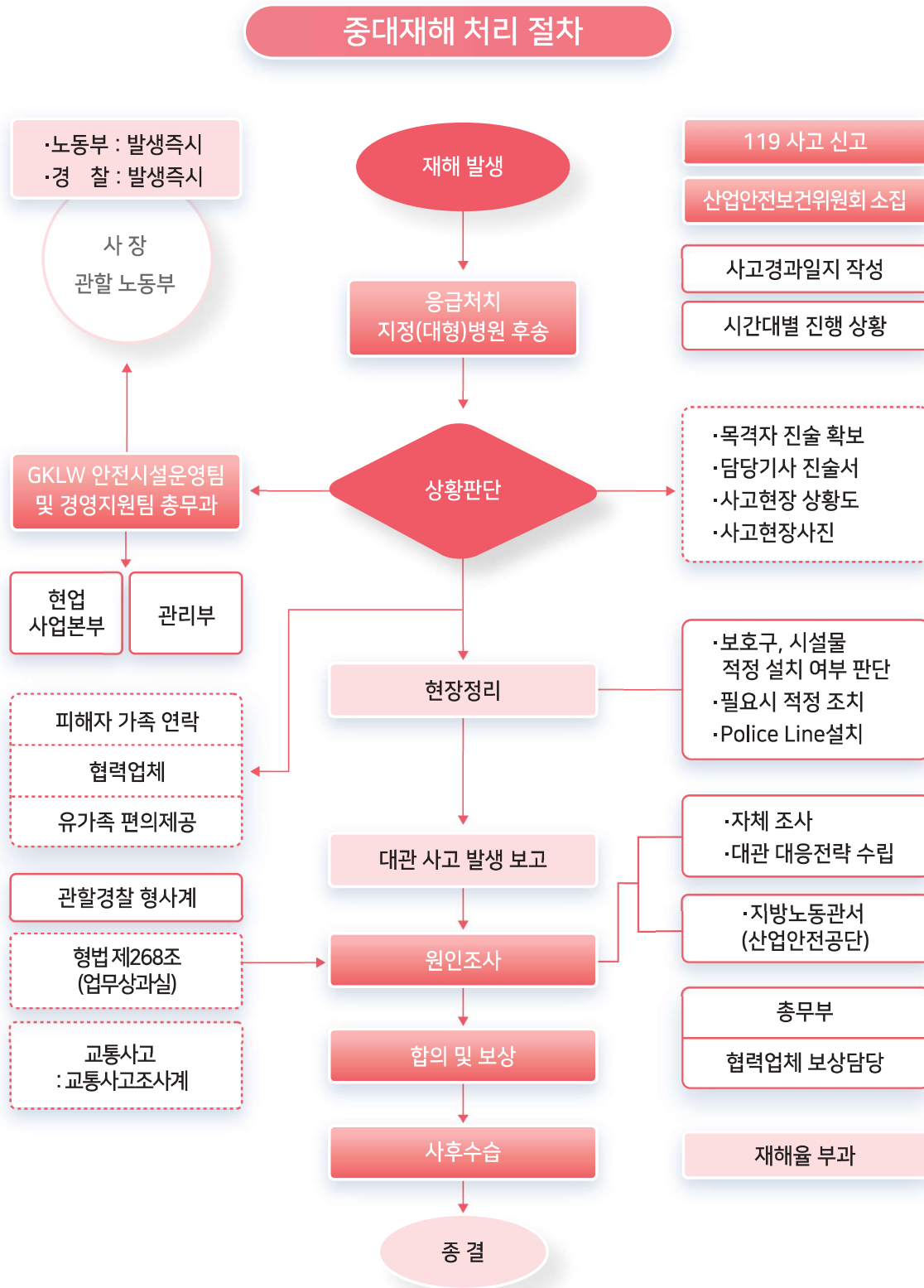
■ 직원 감염노출 및 안전사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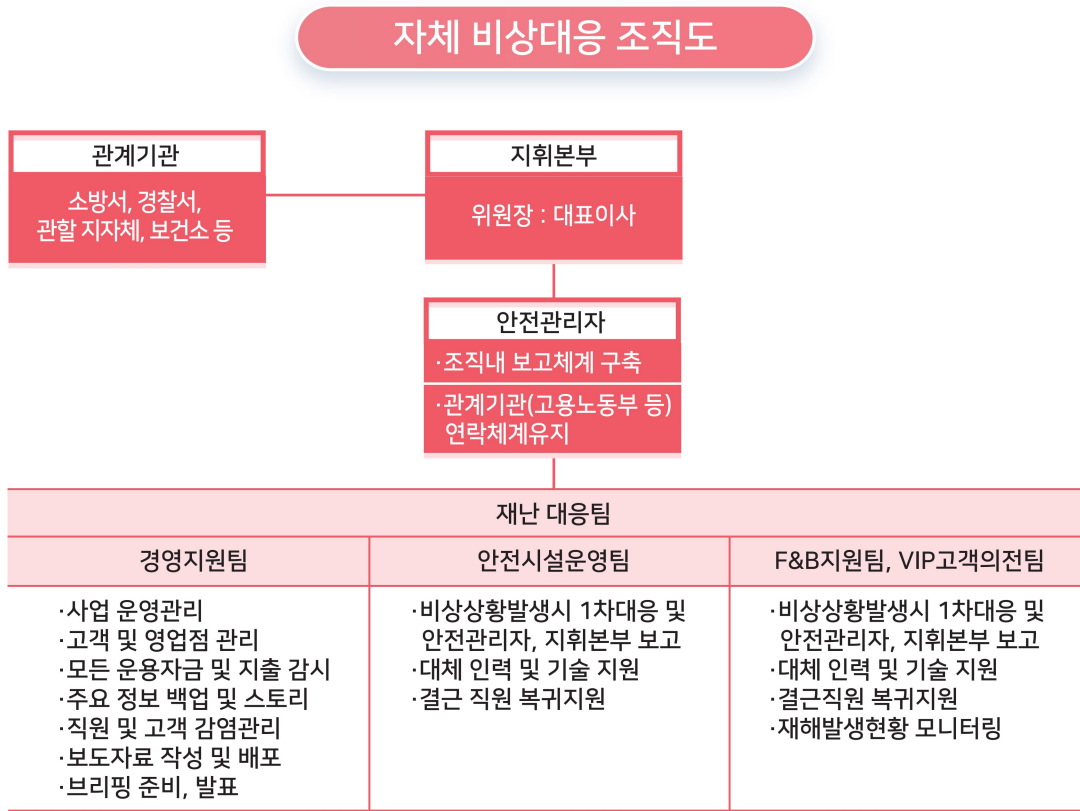
■ 재난경보 발령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비상대응 조직도



■ 재난 대응팀

가. 안전시설운영팀, F&B지원팀, VIP고객의전팀

- 1) 재난 발생시 해당 상황 청취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유선보고한다.(先유선 後서면보고)
- 2)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 3)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장 주변 진 · 출입로 확보를 위한 경계선 등을 설치한다.
- 4) 전기,가스, 수도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및 관계기관과 협조한다.

나. 경영지원팀, 안전시설운영팀

- 1)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2)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필요부서에 신규 전화번호 배정 등의 업무를 해당부서와 조정하여 지원한다.
- 3) 경영지원팀장은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다. GKLWITH 규정집

대응 매뉴얼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사내 규정을 참고한다.

라. 관계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060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03 (삼성동, 선산빌딩) GKLWITH
T 02-3442-7625 F 02-3442-7632

603, Samseong-ro, Gangnam-gu, Seoul, Korea, 06095
T +82-3442-7625 F +82-2-3442-7632

www.gklwith.co.kr